

변경대비표

2026.07.29

○ 편 드 명 : 흥국고배당TOP1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○ 정정사유 :

- 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
- 2) 채권평가회사 추가
- 3) 내부처리지침 반영
- 4) 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(홍찬양)
- 5)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조항 보완

○ 상세내역 :

[집합투자규약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27조(환매가 격 및 환매방 법)	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조항 보완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 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(생 략)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 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 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 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 한다. ④(생 략)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 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<u>다만,</u> <u>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</u> <u>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</u> <u>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</u> <u>하여 산정한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 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 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④(현행과 같음)
제44조(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변 경)	자구 수정	①~③(생 략) ④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 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 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 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 산을 <u>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</u> <u>인출한다.</u>	①~③(현행과 같음) ④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 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 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 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 산을 <u>한도로 한다.</u>
제52조(수익증 권의 통장거 래)	자구 수정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(종류C-p, 종류C-pe, 종류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 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(종류C-p, 종류C-pe, 종류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

		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증권(일괄)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) 채권평가회사 추가 3) 내부처리지침 반영 4) 부책임용운전문인력 추가 (홍찬양)	[요약] - 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 - 운용전문인력 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 기준) 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. 채권평가회사 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	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운전문인력 추가(홍찬양)	부책임용운전문인력 : 조정남	부책임용운전문인력 : 조정남, 홍찬양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부책임용운전문인력 추가(홍찬양)	부책임용운전문인력 : 조정남	부책임용운전문인력 : 조정남, 홍찬양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내부처리지침 반영	[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] -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위기국면 분류는 아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1. 초기국면 :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2. 진행국면 : 위기가 본격 진행중인 상황 3. 비상국면 : 위기가 상당수준 고조된 상황 4. 해소국면 : 위기가 진정되는 상황	[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] - 펀드 유동성 부족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국면 및 대응은 아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1. 초기국면 : 원인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(운용본부) 2. 진행국면 :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강화 (운용본부, 위험관리실, 준법감시실, 마케팅본부)

			3. 비상국면 : 환매연기 및 만기연장 검토, 판매사/수익자 통지,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소집, 감독원 보고 등 (위험관리실무위원회) 4. 해소국면 : 업무정상화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등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. 채권평가회사	채권평가회사 추가	<추가>	EG자산평가(주)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(홍찬양)	[요약] - 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 - 운용전문인력		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(홍찬양)	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조정남	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조정남, 홍찬양